

4단계 BK21사업
지속가능생활시스템교육연구단
운영 내규

2021. 03. 01

고려대학교

4단계 BK21사업 지속가능생활시스템교육연구단

4단계 BK21사업 지속가능생활시스템교육연구단 운영 내규

2021년 3월 1일 제정
2021년 8월 1일 일부개정
2023년 3월 1일 일부개정
2023년 3월 2일 일부개정

<4단계 BK21 지속가능생활시스템교육연구단>

제 1 장 교육연구단 조성 및 운영조직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BK21사업 지속가능생활시스템교육연구단(이하 “연구단”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구성) 연구단은 기획추진위원회, 연구단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 사업운영위원회, 사업평가위원회 및 사업팀을 조성한다(【별첨1】 참조).

제3조 (기획추진위원회) ① (설치목적) 본교의 4단계 BK21사업 및 연구단 운영에 필요한 주요 정책과 전략을 총괄 조정한다. <개정 2021. 8. 1.>

② (역할과 기능) 4단계 BK21사업 시행 전략 및 정책 수립, 4단계 BK21사업 총괄 기획 및 추진, 4단계 BK21사업 관련 주요사항 심의 및 조정 및 기타 4단계 BK21사업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 (연구단운영위원회) ① (설치목적) 4단계 BK21사업본부장(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과 전체 4단계 BK21연구단장들로 구성되며, BK21 개별 연구단장들이 연구단 운영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② (역할과 기능) 4단계 BK21연구단 운영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분석 및 협의, 문제 해결방안 모색 및 대응전략 수립, 각종 평가 및 보고서 제출 관련 지원방안 수립, 기타 연구단 운영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제5조 (실무위원회) ① (설치목적) 4단계 BK21연구단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행정처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업무지원 기능을 담당한다.

② (역할과 기능) BK21기획추진위원회에서 지원을 위임한 사항, 4단계 BK21연구단운영위원회에서 지원을 위임한 사항, 기타 4단계 BK21연구단 운영에서 발생하는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제6조 (사업운영위원회) ① (설치목적) 연구단의 전반적인 운영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② (구성원) 지속가능생활시스템교육연구단의 단장과 각 팀장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위원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별첨2】 참조).

③ (역할과 기능) 발전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고, 연구단 운영의 중요 쟁점 사안을 결정하며, 평가 결과 활용 방안 결정 및 실행과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제7조 (사업평가운영위원회) ① (설치목적) 사업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기 위한 평가단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② (구성원) 지속가능생활시스템교육연구단 연구단장, 부단장 1인, 본 연구단에 소속하지 않은 본교 교수 1인 및 외부인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별첨3】 참조).

③ (역할과 기능) 연구단의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 및 운영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한다.

제8조 (기획관리팀) ① (설치목적) 본 연구단 참여인력의 연구실적 향상을 위한 연구지원 및 성과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구성원) 연구단장을 팀장으로 하고, 부단장 2인, 연구단 연구교수 1인 이상, 행정전담인력을 팀원으로 하여 팀을 구성한다(【별첨4】 참조).

③ (역할과 기능) 다양한 연구 지원과 성과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참여인력에게 보고한다.

제9조 (사업팀) ① (설치목적) 본 연구단의 주요 교육·연구프로그램 및 국제화 사업과 교육·산관학협력사업을 수행한다.

② (구성원) 지속가능생활시스템 교육연구단의 생활과학사업팀, 디자인사업팀, 교육·산관학협력팀의 장과 팀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8. 1.>

③ (역할과 기능) 교육프로그램, 연구프로그램 및 인프라 국제화 프로그램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제 2 장 참여교수에 관한 내규

제10조 (목적) 이 규정은 BK21사업 연구단의 참여교수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

제11조 (참여교수 자격) ① 4단계 BK21사업에 참여하는 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전임교원으로 한다.

②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교수는 연구단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교수 중 해당기간 동안 학생지도(논문지도 등)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연구단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휴직 중인 교수
2. 연구년 및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 출장 중에 있는 교수
3.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 참여 제한 조치 기간 내에 있는 교수

③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참여교수를 변경 하거나 그 수를 늘릴 수 있다.

④ 사업 참여교수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참여교수 변경에 따른 연구업적 목록 등 관련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참여교수 임무) ① 4단계 BK21사업 사업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다.

② 참여 및 지원 대학원생들이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지도한다.

③ 지도학생들 중 참여 및 지원 대학원생을 선발 및 확인 후 연구단에 통보하도록 한다.

제13조 (참여교수 지원) ① 4단계 BK21사업 참여교수가 참여대학원생을 인솔하여 국제학

술대회에 참가할 경우, 여비(항공료와 학회등록비에 한함)를 전액 지원한다(단, 외부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연구단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② 참여교수가 지속가능생활시스템융합전공(이하 “융합전공”이라 한다) 내 신규교과목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의 승인 후 교육과정 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

③ 연구실적과 정부 및 민간 연구비 수주 또는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국제화 사업 운영 실적이 우수하고 대학원생 지도업적이 탁월한 교수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며, 이는 연구단 자체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별첨5】 참조).

제14조 (수행결과에 대한 처리) 참여교수의 차년도 참여여부는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 회의 및 진출입대상 교수와 연구단장의 개별회의를 거쳐 결정한다(단, 연구단장이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교체하지 않을 수 있음).

제 3 장 신진연구인력에 관한 내규

제15조 (목적) 이 규정은 BK21 연구단의 신진연구인력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

제16조 (신진연구인력 자격) ① 신진연구인력으로 박사후과정생(또는 박사후연구원) 및 계약교수를 채용할 수 있다. 박사후과정생 및 계약교수는 아래에 해당되는 자에 준한다.

1. 연구경력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 1년 이상인 자에 한한다.
2. 소속 연구단에서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3.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제한한다(2명 이하 채용 시 예외).

②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 단, 박사학위 취득자들 중 자교생은 3분의 2 이내로 제한한다(2명 이하 채용 시 예외).

③ 신진연구인력 채용 시에는 급여, 퇴직금 등 근로조건, 신진연구인력의 의무와 책임, 사업비 지원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와 계약 불이행시 계약해지 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7조 (신진연구인력 임용절차) ① 신진연구인력은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교원의 전공분야와 관계되는 대학(부)장 또는 대학원장(전문/특수 대학원 포함)과 당해 연구단장이 협의하여 총장에게 상신하여 총장이 임용한다(단 국제교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단장이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② 임용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1차년도 및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최대 4년까지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직위) 계약교수와 박사후연구원 직위는 연구교수로 한다.

④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규임용 제출서류

가. 이력서 및 연구실적목록 1부

나. 최종학위증명서 또는 학위기 사본 1부

다. 주민등록초본(대한민국 국적자 경우) 또는 여권사본(외국 국적자 경우, 추후 외국인 사본 제출) 1부

라. 재직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마. 4단계 BK21사업 신진연구인력 임용계약서 2부

바. 그 외 본교 비전임교원 임용에 따른 필요 서류 <개정 2021. 8. 1.>

2. 재임용 제출서류

가. 이력서 및 연구실적목록 1부

나. 4단계 BK21사업 신진연구인력 임용계약서 2부

다. 그 외 본교 비전임교원 임용에 따른 필요 서류 <개정 2021. 8. 1.>

⑤ 신진연구인력은 계약 갱신을 원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재임용 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임용 심사기준은 연구실적 70%, 교육연구단 공헌도 30%로 하며, 심사에서 80점 이상 취득하지 못하면 재임용하지 않는다(【별첨6-2】 참조).

제18조 (신진연구인력 임무) ① 연구단이 연도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 프로그램 및 팀별로 관리하며, 연구단의 연차보고서 작성을 주관한다.

② 논문게재 등 학술업적 및 교육성과 등을 달성하고, 재임용 이전에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전문학술지에 주저자로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다. <개정 2023. 03. 02.>

③ 참여교수들을 보좌하여 지원대학원생의 논문과 비교과활동을 지도한다.

④ 참여교수 또는 대학원생들과 공동으로 논문게재 및 학회발표를 수행한다.

⑤ 연구단 콜로키움을 진행하고 연 2회 이상 본인의 연구 수행성과에 대하여 발표한다. <개정 2023. 03. 02.>

제19조 (신진연구인력 급여 및 4대보험) ① 신진연구인력은 월 3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국고 지원금에서 인건비를 지불한다.

②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기관부담금은 4단계 BK21사업지원팀에서 산출하여 연구단으로 개별통보하고, 개인부담금은 피고용자가 납부하는 보험금으로 월 급여에서 공제한다.

제20조 (신진연구인력 지원) ① 신진연구인력의 연구실적이 우수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별첨6-1】을 참고로 하고 연구단 자체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개정 2023. 03. 02.>

② 단독 해외연수가 가능하지만, 30일을 초과하는 해외연수와 국외 파견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 03. 02.>

③ 단·장기해외연수 경비는 BK 참여학생과 동일하게【별첨12】를 따른다. <개정 2023. 03. 02.>

④ 국제학술대회 경비는【별첨9】를 따른다. <개정 2023. 03. 02.>

제21조 (신진연구인력 강의 및 기타) ① 신진연구인력은 연구단 내에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해야 하므로 외부시간 강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의 장 또는 연구단장의 승인을 받아 학교 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6학점 이내의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단 비정규강의(단기성 특강 포함)는 연구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한다.

② 신진연구인력은 연구단장의 승인 하에 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③ (연구중단조치) 재직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구를 중단한다.

1. 무단결근 등 복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2. 임용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 발견된 경우

3. 다른 기관에 취업하여 정기적인 보수를 받고 있으면서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4. 본인이 연구를 포기하거나 연구단에서 지원중단을 요청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5. 연구기간 중에 취업하게 된 경우
6. 질병 등 기타 심신장애로 연구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퇴직 시 처리할 업무) 퇴직 시에는 퇴직의사를 최소한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연구단(팀)장은 사직서를 첨부하여 4단계 BK21사업 사업지원팀과 교무지원부에 통보한다. 퇴직일자를 기점으로 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 ⑤ 신진연구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 4 장 대학원생에 관한 내규

제22조 (목적) 이 규정은 BK21연구단의 학생의 바람직한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

제23조 (참여대학원생 자격) ①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사업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참여교수, 공동지도교수의 경우 참여교수 모두가 참여하는 경우)가 지도하는 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본인 명의로 4대 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야 한다. 단,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하는 예외 사항은 4단계 BK21사업 사업 관리 운영 기준의 11조 3항의 각 호의 내용에 따른다.

② 학위과정 수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생 등록이 된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갖는다. 다만, 각 호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및 박사수료생 <개정 2023. 03. 02.>

③ 참여대학원생은 학내·외 주·야간을 불문하고 주당 6시간 이내의 강의를 허용하며 연구단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연구과제도 참여할 수 있다.

④ 참여대학원생은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의 4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참여대학원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 (지원대학원생 자격) 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4단계 BK21사업 사업에서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 교육연구단의 장은 참여대학원생 중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있다. 지원대학원생은 제1조에 해당되면서 주 40시간 이상 관련 연구 및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② 외국인 학생의 경우, 외국인 대학원생이 연구단 내에서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연구과제의 참여, 학술문헌번역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을 하는 경우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의 지원 단가범위에서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학생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도 지원대학원생으로 선정될 수 있다.

제25조 (지원대학원생 선발) ① 제23조와 제24조에 해당하는 자로 각 참여교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

- ② ①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참여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한다.
- ③ 제출한 연구계획서와 이전 학기 연구실적을 기준으로 연구단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 ④ 외국인 학생의 경우 제24조 ②항의 증빙 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성적과 연구실적 등이 우수한 대학원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⑥ 지원대학원생 선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별첨7】을 참고로 한다.

제26조 (BK사업 참여대학원생 임무) ① BK사업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관련 연구 및 수업에 전념하여야 한다.

② BK사업 참여대학원생은 본 연구단의 융합전공의 교육과정 졸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동시에 소속 학과의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융합전공의 졸업 요건은 별도의 융합전공 규정에 따른다.

③ BK사업 참여대학원생은 지도교수와 주기적인 연구지도 면담에 참여해야 한다.

④ BK사업 참여대학원생은 스터디 그룹, 콜로키움, 비교과 활동, **국제심포지움**, 학술세미나(생활과학연구소 학술세미나 포함) 등 본 연구단에서 주최하는 연구 활동에 75%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연구 활동에 대한 기준은 【별첨8】을 참고한다. 박사과정 학생들은 연구단 콜로키움에서 반드시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03. 02.>

⑤ BK사업 참여대학원생은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한 연구단의 프로그램 및 행사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참여하며, 참여도는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관리하고 지원학생 선발, 장학금 산정 시 반영한다. 마일리지 제도의 세부사항은 【별첨8-1】을 참고한다.

⑥ BK사업 참여대학원생은 연구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며, 학위논문 제출 시 표절 검사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27조 (지원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원) ① 지원대학원생으로 선발된 대학원생에게 국고 지원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단 연구단에 기여도가 높은 학생은 연구단장 및 참여교수의 승인 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개정 2021. 08. 01>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월 100만원 이상 <개정 2023. 03. 01>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월 160만원 이상 <개정 2023. 03. 01>

3.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월 130만원 이상 <개정 2023. 03. 01>

제28조 (BK사업 참여대학원생 성과급 지원) ① BK사업 참여대학원생은 국내·외 학술지 게재지원 및 발표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단, 학술지 게재지원 및 학술대회 발표지원 내규 기준에 준한다(【별첨9】참조).

② 학기 단위로 연구 및 발표실적이 우수한 BK사업 참여대학원생들에게는 ‘우수연구자상’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BK사업 참여대학원생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시상하는 우수연구시상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별첨10】참고).

③ 비교과 및 교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연구장학금을 받지 않는 참여대학원생에게 ‘특별연구장학금’을 10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별첨10】을 참고로 하고 연구단 자체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29조 (논문게재 지원신청) ① BK사업 참여대학원생은 국내·외 학술지 게재시 논문 게재료 및 심사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별첨9】참조).

① (신청방법) 논문 게재료 및 심사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학술지 논문 게재료 지원신청서 1부

2. 송금 혹은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원본(혹은 사본), 학회가 발급한 영수증 원본(혹은 사본) 각 1부

3. 게재가 완료된 논문 증빙 자료 1부. 단, 증빙자료는 학술지명과 주저자가 확인 가능한 별쇄본의 일부 또는 학술지 표지 및 목차 등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신청시기) 학술지 발표를 위해 사전에 심사료와 게재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게재 완료 후에는 학회지 논문 발간일 기준으로 사업기간 내(1년 단위)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된 후에 지원을 신청한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30조 (수행결과에 대한 처리) BK사업 참여대학원생들의 수행결과는 다음 장학생 선발시 반영되며, 수행결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학생의 경우 지도교수 의견 및 4단계 BK21사업 사업운영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사업팀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현저한 위법 사항이 발생 시, 장학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 5 장 연구단 자체평가에 관한 내규

제31조 (목적) 이 규정은 BK21연구단의 자율적인 사업개선을 목적으로 부진사항이나 사업상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다. <개정 2021. 8. 1.>

제32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자체평가를 위한 사업평가운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내부평가위원: ‘자체평가위원회’는 내부평가위원과 외부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내부평가위원은 연구단장과 부단장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연구단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② 외부평가위원: 외부평가위원은 【별첨3】의 외부평가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이들에게는 평가에 대한 소정의 평가비용을 전문가 활용비로 지급한다.

제33조 (평가위원회의 업무) 각 평가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연구단 내부자체평가

1. 교육부문 정량 실적 평가(학생 논문 및 발표 실적, 졸업생 배출실적)
2. 교육부문 계획 대비 실적 평가
3. 연구부문 정량 실적 평가(참여교수학술연구, 연구비수주 실적 등)
4. 참여교수 국제화 실적 평가
5. 연구부문 계획 대비 실적 평가
6. 예산에 대한 행·재정평가

② 연구단 외부자체평가

1. 교육부문 정량 실적 평가(학생 논문 및 발표 실적, 졸업생 배출 실적)
2. 교육부문 계획 대비 실적 평가
3. 연구부문 정량 실적 평가(참여교수학술연구, 연구비수주 실적 등)
4. 참여교수 국제화 실적 평가
5. 연구부문 계획 대비 실적 평가

제34조 (평가의 절차)

① 평가시기: 자체평가는 반기별로 실시하되, 매년 2월에 상반기 하반기를 포함한 1년간 평가를, 8월에는 당해연도 상반기 자체평가를 시행한다.

② 자료제출: 자체평가를 위해 사업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및 학생들에 대한 연구실적 자료와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평가 결과의 활용)

- ① 평가의 결과는 종료와 동시에 보고한다.
- ② 연구단의 평가 결과는 연구단 구성원의 성과급 기준 및 연구단 차년도 개선을 위한 준거로 활용한다.
- ③ 자체평가보고서 및 결과를 기관장에게 제출한다.

제 6 장 국제 교류에 관한 내규

제36조 (목적) 이 규정은 BK21연구단의 국제 교류 활동의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

제37조 (국제 교류의 정의) 지속가능생활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연구를 위해 수행하는 타국과의 인적 교류, 프로그램 교류, 학술 및 연구 협력 등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제38조 (인적 교류의 정의) 인적 교류라 함은 국제적 학술 역량을 강화·증진시키기 위해 타국과 교원, 신진연구인력 및 학생들의 상호 방문, 체류, 장·단기 연수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제39조 (국내 교원의 외국방문) ① (자격) 국내 교원은 본교 BK21 지속가능생활시스템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전담인력에 한한다. <개정 2021. 08. 01>

② (기간) 국내 교원이 학술교류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할 경우 단기 체류는 1개월 이내, 중기 체류는 6개월 이내, 장기 체류는 6개월 이상을 의미한다.

③ (분야) 연구 교류의 분야는 BK21 지속가능생활시스템연구단의 세부 전공 영역을 포함한다.

④ (체제비) 국내 교원이 외국에 체류하며 공동 혹은 단독 연구를 수행할 경우 체제비를 지급한다(구체적 비용 기준 및 한도는 교내 및 BK21 지속가능생활시스템 연구단의 기준을 따른다).

제40조 (국외 전문가 초청) ① (자격) 국외전문가는 외국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 연구원과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 (기간) 국외전문가를 초청할 경우 학술대회 등을 위한 단기 체류(1개월 이내)는 물론, 연구년을 이용한 지속적 연구협력 활동을 위해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중장기 체류를 포함한다.

③ (분야) 연구 교류의 분야는 BK21 지속가능생활시스템 연구단의 세부 전공 영역을 포함한다.

④ (자문료) 국외전문가를 초청하여 체류시키며 학술 연구 및 기타 자문을 받을 경우 제세를 포함하여 장기자문료는 월 기준 \$6,000 이하, 단기자문료는 일 기준 \$300 이하로 지급한다. 세부기준은 【별첨11】과 같이 한다.

제41조 (신진연구인력의 국외 연수) ① (자격) 계약교수와 박사후과정생을 포함한다(구체적 자격기준은 신진연구인력에 관한 내규 참조).

② (기간 및 지원기준) 신진연구인력의 장단기 연수의 여비와 체제비를 지원하되 교내 연구지원의 기준에 준한다.

제42조 (국내 학생의 국외 연수) ① (취지) BK사업 참여대학원생의 국제적 학술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외대학이나 연구기관을 방문, 연수하게 하고 이를 지원한다.

② (자격) 학업성적, 연구성과, 사업팀 기여도, 외국어 수행능력이 우수한 학생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 연구단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으로부터 연수 허락을 사전에 받아야 하며, 사업팀이 지정하는 서류(연수계획서, 서약서 등)을 소정 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③ (기간 및 체재비) 6개월 이내의 학비와 생활비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경비지급 세부기준은 【별첨12】와 같이 한다.

④ (수행내용) 국외 연수가 종료된 후에는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한다. 1개월 이상 장기연수자는 매월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43조 (외국 학생의 국내 연수) ① (취지) 외국 대학원생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본교 BK21 지속가능생활시스템 연구단 과목을 수강하거나 본교 대학원생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상대 국가의 교육적 관심사에 대한 의식을 확대시킨다.

② (자격) 외국의 석사, 박사과정의 학생 중 국내 연수를 희망하고 소속 학교의 일정 기준을 충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③ (기간) 6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장기 연구가 필요한 경우 2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④ (체제비) 소속 학교의 지원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적 우수자, 생활 형편이 어려운 자 등 특별한 경우,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고 그 기준은 교내 규정 및 BK21 지속가능생활시스템 연구단 내규에 준한다.

제44조 (프로그램 교류의 정의) 프로그램 교류라 함은 타국 학교 및 교육기관과 상호 교류 강좌 개설, 공동 교육과정, 학점 교류제 및 공동 학위제 등 제반 교육프로그램의 교류, 협력을 포괄하여 지칭한다.

제45조 (프로그램 교류의 세부사항) ① 영장, 외국어 강좌 개설: 타국 학생이 원활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영장 및 외국어 강의를 충분히 마련한다.

② 공동 교육과정: 타국 대학들과 공동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학점을 교류하고 나아가 타국과의 학위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규정을 마련한다.

③ 방학 중 단기과정: 외국학생을 위해 방학 중 단기과정을 개설, 여기서 이수한 학점을 필요시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④ 교원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외국어 강의 및 외국 교육에 대해 효과적으로 강의하기 위해 연수 프로그램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교원들이 각 전공영역을 외국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는 규정 및 기반을 마련한다.

제46조 (학술 교류의 정의) ① 학술교류라 함은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국제 학술대회 개최, 공동 연구 및 공동학회 운영, 공동 학술지 발간 등의 제반 협력 업무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개정 2021. 08. 01>

② 학술대회 참가 이전 약탈적 학술대회 여부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별첨14】를 통해 부실학회 여부를 파악한다.<개정 2021. 08. 01>

③ 학술교류 참여대학원생 선발은 각 참여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에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선발하되, 그 최종 권한은 연구단장이 갖는다. <신설 2021. 08. 01>

제47조 (국제학술대회) ① (취지) BK21 지속가능생활시스템 연구단 연구 제반 분야의 국제화와 학술 교류를 위하여 국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② (횟수) 국제학술대회는 매년 1회를 원칙으로 한다.
- ③ (강연료) 국외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술 강연을 할 경우 제세를 포함하여 회당 \$1,500의 한도 내에서 강연료를 지급한다(D2비자 가능자에 한함).
- ④ (수용비) 홍보용 및 학술지 인쇄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지급방식) 외국인이 국제학술 교류의 목적으로 본교를 방문할 경우, 식비와 숙박비를 포함한 체제비는 별도로 실비 정산하되 국외여비규정에 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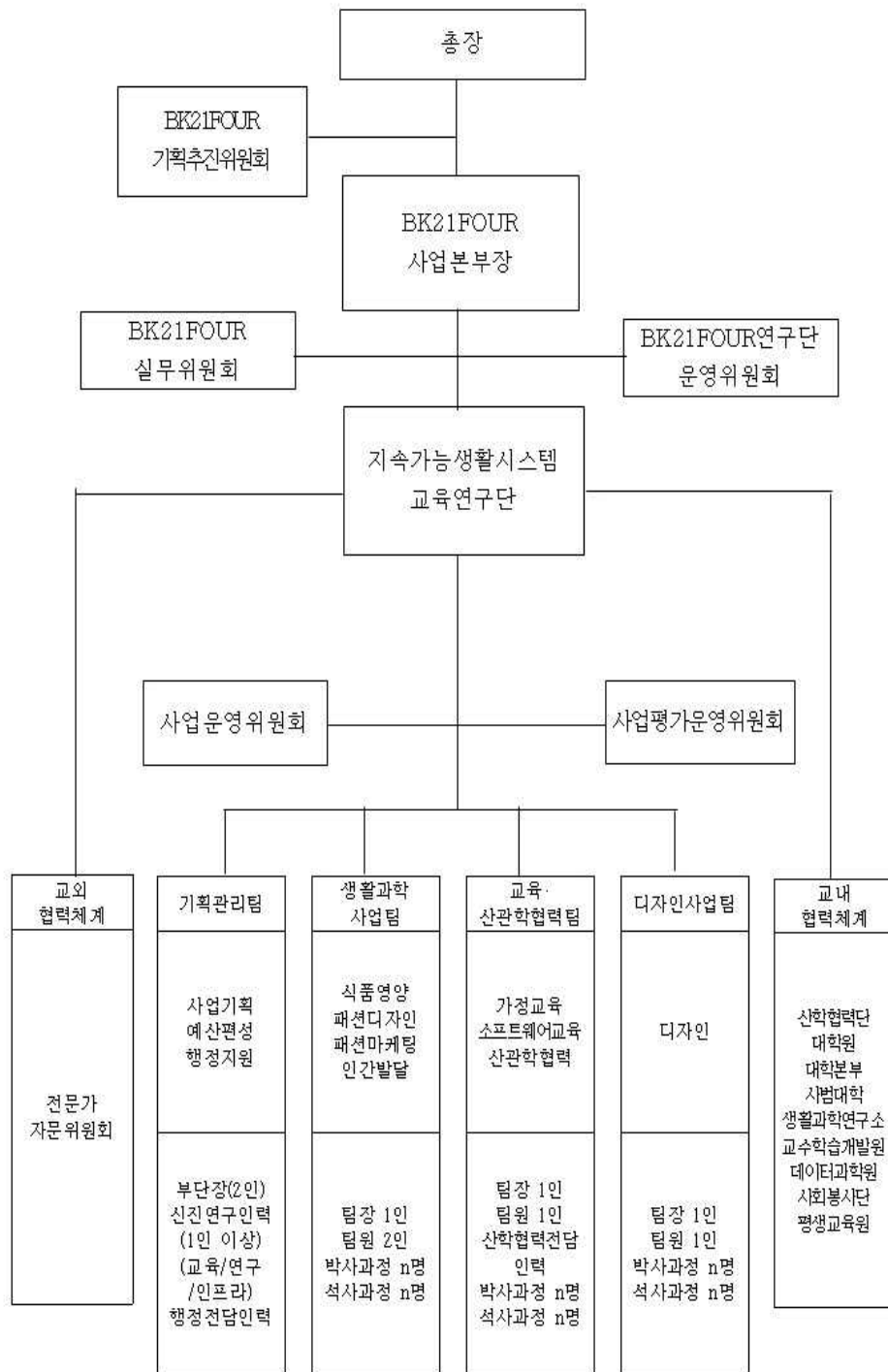
부칙

- 1. 이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내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 (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31조, 제36조, 제39조, 제46조, 별첨7, 별첨9 개정)
- (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7조 개정)
- (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7조 개정)

【별첨1】 연구단 조직 및 구성



【별첨2】 사업운영위원회 구성원 <개정 2023. 03. 02.>

구 분	성 명	직 위
위원장	이윤정	연구단장 겸 기획관리팀장
부위원장	김보섭	사업부단장
부위원장	유난숙	교육부단장
위원	임정하	생활과학사업팀장
위원	김유경	생활과학사업팀원
위원	이예영	생활과학사업팀원
위원	권민성	디자인사업팀장
위원	박승민	디자인사업팀원

【별첨3】 사업평가 운영위원회 구성원 <개정 2023. 03. 02.>

구 분	성 명	직 위
외부평가위원	TBD	
외부평가위원	TBD	
외부평가위원	TBD	
외부평가위원	TBD	
내부평가위원	TBD	
내부평가위원(사업부단장)	김보섭	사업부단장, 고려대 디자인조형학부 교수
평가위원장(연구단장)	이윤정	연구단장, 고려대 가정교육과 교수

【별첨4】 기획관리팀 구성원 <개정 2023. 03. 02.>

구 분	성 명	직 위
팀장	이윤정	연구단장 겸 지속가능생활시스템융합전공 주임
부팀장	김보섭	연구단 사업부단장
부팀장	유난숙	연구단 교육부단장
팀원	김경민	연구단 연구교수
팀원	이하나	연구단 연구교수
행정전담인력	김연광	행정전담인력

【별첨5】 참여교수 성과급 심사절차 및 기준 ① (선정절차) 당해 연도 참여교수들을 대상으로 연구단 자체평가 위원회에서 정해진 심사 준거를 참고로 약간명을 선정한다.

② (심사기준) 성과급을 위한 선정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30%
2. 대학원생 지도업적 30%
 - 가. 연구단 전일제 대학원생 수
 - 나. BK사업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실적
 - 다. 취업실적
3. 국제교류 실적(학생 파견, 공동 프로그램/협정 체결) 15%
4. 정부 또는 민간 연구비 실적 15%
5.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10%

※ 단, 성과급은 당해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별첨6-1】 신진연구인력 성과급 심사절차 및 기준 ① (선정절차) 해당 학기 신진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연구단 자체평가 위원회에서 정해진 심사준거를 참고로 약간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심사기준) 학기별 성과급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60%
 2. 연구단 공헌도 40%
 - 가. BK사업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 수행 조장 및 공동연구 수행 15%
 - 나. 비교과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원 10%
 - 다. 참여교수들과 공동연구 10%
 - 라. 국제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원 5%
- ※ 단, 인센티브 금액은 당해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별첨6-2】 신진연구인력 재임용 심사절차 및 기준 ① (심사절차) 신진연구인력은 계약 갱신을 원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재임용 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기준) 재임용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재임용을 위해서는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전문학술지 논문 게재 70점
2. 연구단 공헌도 30점
 - 가. BK사업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 수행 조장 및 공동연구 수행 50%
 - 나. 비교과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원 20%
 - 다. 국제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원 20%
 - 라. 참여교수들과 공동연구 10%

【별첨7】 BK사업 참여대학원생 및 지원대학원생 선발 지침 ① (참여대학원생 선발) 참여대학원생 선발은 다음의 기준으로 한다.

1. 지속가능생활시스템 융합전공생 중 BK참여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학생을 추천받는다.
2. 추천받은 학생 중 선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08. 01>
 - 가. 생활과학과 석사 12인, 박사 3인, 디자인조형학부 석사 4인, 박사 1인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참여교수 당 지도학생 석사 2인, 박사 1인을 우선 선발한다.
 - 다. (나)에 의해 선발한 학생의 수가 참여가능한 대학원생수보다 적은 경우, 추천 받지 않은 지도학생이 많은 참여교수로부터 추가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 라. (나)에 의해 선발한 학생의 수가 참여가능한 대학원생수보다 많은 경우, 추천 받은 지도학생이 적은 참여교수의 학생 순으로 선발한다.

② (지원대학원생 선발) 지원대학원생 선발은 다음의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 08. 01>

1. 각 참여교수의 지도학생중 추천을 받아 선발하되, 총 지원대학원생의 수는 14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추천받은 학생 중 성적과 연구실적, 활동내역, 및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

【별첨8】 BK사업 참여대학원생 연구 활동 ① BK21 사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대학원생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 제도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1. 아래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발표, 참여 시 마일리지를 부여하며, 이를 통해 장학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한다.

2. 【별첨10】 BK사업 참여대학원생 성과급 심사절차 및 기준의 ③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장학금이 수여된다.

② 연구 활동의 종류 및 지침

1. 스터디 그룹

가. 스터디 그룹은 BK사업 참여대학원생을 비롯한 연구단 소속 학과의 대학원생들로 구성되며, 주제 별(영문 논문 writing 그룹 포함), 세부전공 별, 전공영역 별, 전공영역 간 등 다양한 형태로 조직·운영할 수 있다.

나. 스터디 그룹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BK21지속가능생활시스템교육연구단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도 참여 가능하나 총 인원의 2/3 이상은 BK사업 참여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스터디 그룹은 신청서 작성 및 지도교수 승인 후 구성할 수 있다.

라. BK사업 참여대학원생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연구 모임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마. 상세한 계획과 지침은 연구단에서 정하는 스터디 그룹 운영 지침을 따른다.

2. 콜로키움 (월례, 연구단 콜로키움)

가. 연구단은 대학원생 학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문 간 활발한 교류를 위한 다양한 콜로키움을 지원하고 개최한다.

나. 운영 유형

(1) 월례 콜로키움은 전공영역 내 학문적 소통을 위해 전공 내 지도교수의 책임 하에 월 1회 개최한다.

(2) 연구단 콜로키움은 학기 당 2회, 연간 4회 개최한다. 연구교수 중심의 콜로키움 2회와 학생 중심의 콜로키움 2회를 개최한다.

다. 모든 BK사업 참여대학원생은 모든 콜로키움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한다.

라. BK사업 참여대학원생은 콜로키움 참여율이 75% 이상이어야 하며, 박사과정 학생들은 연구단 콜로키움에서 반드시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단 콜로키움 발표를 지속가능발전 관련 전문 학회 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바. 상세한 계획과 지침은 연구단에서 정하는 콜로키움 운영 지침을 따른다.

3. 비교과 활동

가. BK사업 참여대학원생은 연구단에서 주최하는 비교과 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한다.

나. 비교과 활동 세부사항은 【별첨8-1】을 따른다.

4. 국제심포지움 <개정 2023. 03. 02.>

가. BK사업 참여대학원생은 연구단에서 주최하는 국제심포지움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개정 2023. 03. 02.>

나. 세부사항은 연구단에서 정하는 국제심포지움 별도 방침을 따른다. <개정 2023. 03. 02.>

【별첨8-1】 비교과 마일리지 및 지속가능생활시스템융합교육연구단 인증제도 <개정 2023. 03. 02.>

비교과 프로그램	1회당 점수	적립가능점수(1년)	필수사항 (졸업 전까지)
오리엔테이션 및 지도교수 수시상담	-	10점	20점
전공영역 월례 콜로키움 (연 10회 이상)	10점	100점+	450점
사업단 콜로키움 (연 4회 이상)	50점	100점	
국제심포지움/Special Seminar (연 2회 이상 개최 예정)	50점	100점+	
스터디 그룹 참여 (매 학기)	50점	100점	200점
스터디 그룹 대표 (매 학기)	60점	120점	-
makeathon 참여 (연 2회)	75점	150점	-
makeathon 기획 (연 2회)	100점	200점	-
다양성위원회, 사회공헌단 활동 등 사업단 외 교내외 비교과 활동 (연중 수시)	100점	100점+	100점
합계	-	980점+	800점
인증요건 (졸업 전까지)	1000점 이상		

【별첨9】 BK사업 참여대학원생 학술지 및 학술대회 발표 지원 지침

① 학술지 게재 지원

1. 게재료 및 심사료 지원

가. BK사업 참여대학원생이 주저자로 참여하여 연구재단 등재후보 이상인 국내전문학술지 또는 국제학술지에 게재하는 실비를 **게재 확정시** 합계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3. 03. 02.>

나. 단, 연구비지원을 받은 경우 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교내외의 타 연구지원사업을 통하여 게재료 및 심사료 지원을 받은 연구에 대한 중복 수혜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 국제 전문학술지 게재 또는 국제학술대회 발표를 위한 목적으로 영문 논문 또는 영문 발표 자료를 작성할 시에는 원고에 대한 교정료를 지급한다. 국제 전문학술지 투고 원고의 교정비는 총액 40만원 내에서 실비 지급하며, 참여교수와 공동저자일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교정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연구단에서 요구하는 증빙 서류(교정비 영수증 및 투고 증명서)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소속의 경우 지속가능생활시스템융합전공 또는 지속가능생활시스템융합전공/전공학과 2가지 중 선택할 수 있고 해당 표기일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개정 2023. 03. 02.>

※ 4단계 BK21사업은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반드시 사사(Acknowledgement)가 있어야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사를 명기하면 사업의 대외적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수 있기 때문에 4단계 BK21사업에서는 권장하고 있다.

※ 예시

국문) 본 논문(저서)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고려대학교 지속가능생활시스템교육연구단)으로 지원된 연구임.

영문)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BK21 FOUR Sustainable Living System Research and Education in Korea University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MOE, Korea)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라. 논문 게재 인센티브와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3. 03. 02.>

② 국내학술대회 참가 및 발표지원 <신설 2021. 08. 01>

1. 아래의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하되 여비, 학회등록비 등을 지원한다.

2. 지급 지침은 교내 여비규정을 따르며 총 지원금액은 1인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학술발표가 종료된 후에는 아래의 서류를 연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해당 프로시딩 표지 사본, 논문 제목
 - 나. 발표자 이름이 있는 목차 페이지 사본
 - 다. 발표 내용(해당 프로시딩에 있는 초록, 전문) 사본, 발표 내용이 프로시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PPT 등 발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③ 국제학술대회 참가 및 발표지원

1. 연간 1회에 한하여 **산학협력단여비규정의 기준에 따르고** 아래의 지급 지침의 한도 내에서 **항공비와 숙박비, 학회등록비를 실비 지급하되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항공비는 이코노미클래스를 기준으로 실비 지급한다.)**. <개정 2023. 03. 02.>
2. 연구재단에서 규정한 국제학술대회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술대회에 한한다.
3. 국가·지역별 지급 지침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23. 03. 02.>

구분	아시아		미주·유럽·오세아니아	
	항공비	숙박비 (1일 기준)	항공비	숙박비 (1일 기준)
구두(주저자) 발표	60만원	10만원	최대 200만	

4. 주저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3. 03. 02.>

5. **국제학술대회 등록 최소 2주 전에** 연구단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출장비 청구관련 양식을 포함하여 가. 국제학술대회 지원신청서 나. 국제학술대회발표 증명서(승인서신)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술대회 일정이 변동되었을 때는 관련 사유를 제출하여 예외 사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03. 02.>

6. 학술발표가 종료 된 후에는 아래의 서류를 연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해당 프로시딩 표지 사본, 논문 제목
- 나. 발표자 이름이 있는 목차 페이지 사본
- 다. 발표 내용(해당 프로시딩에 있는 초록, 전문) 사본, 발표 내용이 프로시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PPT 등 발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라.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증빙(참가국 4개국 이상, 발표논문 20건 이상, 외국인 발표 논문 50% 이상 만족 여부)

【별첨10】 BK사업 참여대학원생 성과급 심사절차 및 기준

① 논문 게재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1. 신청대상

가. 국제 전문학술지: 국제 전문학술지(SCI, SSCI, SCIE, A& HCI 등)에 게재 완료한 논문은 개인이 아닌 해당 사업팀(지도교수별)별로 지급한다. 논문 1편당 최대 120만원 까지 지급 가능하며 세부 지급 지침은 아래와 같다.

논문 총저자수(지급비율)	지원대학원생	참여대학원생
1인 (단독, 100%)	60만원	120만원
2인(75%)	45만원	90만원
3인(50%)	30만원	60만원
4인 이상(25%)	15만원	30만원

나. 국내전문학술지와 기타 국제학술지: BK참여대학원생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이상인 국내전문학술지 또는 기타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주저자와 교신저자에게는 20만원, 공동저자에게는 10만원을 주저자와 교신저자를 뺀 나머지 수로 나누어 지급한다. 지도교수는 저자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신청절차

가. 인센티브 지급신청은 논문 발행 직후에 해야 하며, 1학기는 8월 15일, 2학기는 2월 15일까지 지급한다.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1학기는 8월 15일, 2학기는 2월 15일까지 제출한다.

나. 지급신청 시 ① 인센티브지급신청서, ② 해당 논문의 별쇄본(혹은 복사본), ③ 해당 논문이 실린 학술지의 표지 사본, ④ 목차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기간을 경과하거나 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 실적이 있어도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

라. 인센티브 금액은 당해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마. 논문게재료와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3. 03. 02.>

② 우수연구자상

1. (선정절차) 해당 연도 참여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단 자체평가 위원회에서 정해진 심사준거를 참고하여 박사과정과 석사과정 각각 우수연구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학생에게는 상장을 수여한다.

2. (심사기준)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정량평가(연구 및 발표실적) 80% 국내외 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60%, 국내외 학술대회발표 실적 20%

나. 정성평가(기타 연구단 기여도) 20%

③ 특별연구장학금

1. 특별연구장학금은 참여대학원생에게 수여하는 장학금으로 본 연구단의 각종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 대한 참여를 증진시키고 주도적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장학금이다.

2. 연구장학금을 받지 않는 참여대학원생에게 학기 당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상세한 계획과 지침은 연구단에서 정하는 운영 지침을 따르며, 본 연구단의 예산으로 가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별첨11】 해외석학초빙 지침 ① 해외석학 초빙은 본 연구단이 국제적인 수준의 지속가능생활시스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학문적 토대 및 상호유대관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해외저명학자(교수 및 연구원)를 초빙하여 본교에서 학술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해외석학 초빙 시 본 연구단에서 제공하는 개요서에 초빙하는 학자가 BK21 지속가능생활시스템 연구단 연구 향상에 어떠한 기여와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적시되어야 하며, 제출된 개요서의 검토결과 연구단의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지원내역

1. 해외석학초빙 지원항목은 초빙수당(자문료 및 강연료), 항공료, 체재비(숙박비, 식비)를 포함한다.

2. 자문료는 장기자문료 월 기준 \$6,000 이하, 단기자문료는 일 기준 \$300 이하로 지급한다. 강연료는 회당 \$1,500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강연목적 초청일 경우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없다.

3. 항공비는 이코노미클래스를 기준으로 실비 지급한다.

4. 체재비는 숙박비와 식비를 포함하며 실비 정산하되 국외여비규정에 준한다. 단, 체재비는 본 연구단과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기간 동안만 지급하도록 한다.

5. 해외석학 별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항공료 포함) \$6000이다.

【별첨12】 BK사업 참여대학원생 단·장기해외연수 경비 지급 ① 해외연수 지원은 1인 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연구단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추가 지원 신청 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왕복 항공료는 이코노미클래스로 실비를 지원한다.

③ 연수비용 지원금액은 고려대학교 국외 여비규정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따르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사전에 제출된 연수계획서의 검토를 통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지원금액은 여비규정에서 정한 차장 이하 직원 직급에 대한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④ 해외 체류 1개월 이상 장기연수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국제화경비를 통한 지원비 이외 대학원생 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

⑤ 장기연수생이 연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해외연수를 중지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본 연구단에 통보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남은 연수기간의 지원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반납금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반납금액 = [(본 연구단이 지급한 경비총액 중 왕복 항공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x [(중도 종료로 연수를 실시하지 않은 기간) / (장기해외연수를 신청한 총 연수기간)]

[별첨13] 국제학술교류 프로그램 참가지원

① 국제 학술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1. BK사업 참여대학원생과 참여교수가 연구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국제학술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소양 교육, 사무 및 전산 교육 등 인정되지 않음)에 한하여 교육훈련비, 항공비, 숙박비를 지원한다. 항공비와 숙박비의 경우, 참여교수는 본교 여비 규정 및 연구 관리 규정을 따르고 참여대학원생은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 규정을 따른다.

2. 국제학술교류 프로그램 참가 2주 전에 연구단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연구단으로부터 교육프로그램의 참석 가능여부를 확인 받아야하며, 출장 목적, 출장자, 출장 기관, 출장지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3. 프로그램 참가가 종료 된 후에는 가. 해당 프로그램관련 책자 표지 사본, 나. 참석한 프로그램 목차 페이지 사본, 다. 활동한 내용 증빙 서류(자유서식), 라. 경과보고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참가 지원 여부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23. 03. 02.>

② 국제 협업 및 국제교류 연구자 지원

1. BK사업 참여대학원생과 참여교수가 연구수행을 위하여 해외기관에 방문을 하는 경우, 교육훈련비, 항공비, 숙박비를 지원한다. 항공비와 숙박비의 경우, 참여교수는 본교 여비 규정 및 연구 관리 규정을 따르고 참여대학원생은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 규정을 따른다.

2. 연구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구활동에 한하여, 국제 협업 및 국제교류 연구 참가 2주 전 연구단에 가. 연구계획서, 나. 해외기관 초청장을 제출하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며, 출장 목적, 출장자, 출장 기관, 출장지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3. 연구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가. 외부전문가와 활동한 내용(연구물), 나. 활동한 사진(참석인물 반드시 포함), 다. 일자별 경과보고서를 연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참가 지원 여부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23. 03. 02.>

[별첨14] 약탈적 학술대회 여부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체크 리스트	예/아니오	각 리스트에 대한 주의사항
--------	-------	----------------

	(불확실)	
이 학회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만약 들어본 적이 없다면 등록할 때 조심해야 함
웹사이트와 e-mail주소는 합법적으로 보이는가?		e-mail이 무료계정이거나 URL이 무료 웹사이트라면 의심스러운 학회일 수 있음
존경하는 나의 동료가 이 학회에서 발표한 적이 있는가?		동료 등이 이 학회에 한번도 발표한 적이 없다면, 참석하기 전 두 번 이상 고려할 것
주최 측이 아첨하는 e-mail을 보내는가?		신뢰할 만한 학회는 생각을 공유하지만, 자부심을 치켜세우지 않음
주최측은 이 학회가 권위 있는 학술대회라고 주장하는가?		신뢰할 수 있는 학회는 그들의 신뢰성을 정당화 할 필요가 없음
누가 이 학회를 주관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신뢰하는 전문적인 학술·과학기술협회나 단체에 의해 운영되지 않으면 조심할 것
주최자가 신속하게 논문 수락을 보증하는가?		의심스러운 학회는 논문 초록에 대하여 짧은 의사 결정 시간을 보장함
주최자는 학회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할 것을 보장하는가?		신뢰할 수 있는 학회는 동료평가 없이 논문 게재를 결코 보장하지 않음
학회가 리조트나 관광명소에서 열리는가?		학회가 학문적인 학회로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휴가로 선전한다면 약탈적인 학회일 수 있음
이 학회가 사실이라고 보기에 너무 좋은가?		사실이라고 보기에 너무 좋으면 약탈적인 학회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언자와 상의할 것